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 (4)

자료제공 / 조달청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칙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Q

선금지급 후 조정기준일 전에 선금 전액이 정산된 경우 선금공제 여부는?

A

- 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공사 공정 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 ②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③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 전액을 정산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지급되어 있는 선금이 없는 경우에는 동 선금을 공제할 필요 없음

※ 선금정산확인서 등 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관련 규정 : 회계 41301-784, '97. 04. 01

Q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전 또는 이후에 선금을 지급 받은 경우의 공제금액 산출 기준은?

- A
- ①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물가변동 조정 금액에서 선금을 공제한다.
 - ②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선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 ③ 조정기준일(=선금수령일)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시점	행위 내용	물가변동 적용여부
조정 기준일	이전에 선금 수령 시	선금 공제함
	이후에 선금 수령 시	선금 공제하지 않음
	조정기준일에 선금 수령 시	선금 공제하지 않음

! 관련 규정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
- 회제 45107-2281, '95. 11. 22
- 회제 41301-2501, '97. 09. 08

Q

장기계속공사의 선금 적용대가 산출 시 PS금액 처리방법

- A
- 선금은 해당차수계약금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PS 금액에 대한 선금에 대한 적용대가 산정 시 해당차수 계약 금액 내에서만 공제함

예시) 선금 적용대가 산출

총 계약금액 2,000억원 중 PS금액 30억원

- 조정기준일 현재의 물가변동 제외 금액(PS금액 제외) : 1,000억원
- 조정기준일 현재의 차수별 물가변동 제외금액(PS금액 제외) : 100억원일 경우
- 해당차수계약금액 200억원중 PS금액 10억원일 경우
 - ☞ 선금 적용대가 산출시
 - = 200억원 - 100억원 - 10억원 = 90억원

Q

선금 적용대가 산출시 선시공부분에 대한 처리방법은? - 설계변경에 따른 선시공 공정

- A
- ① 선금은 해당차수계약금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기준일 현재 계약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선금 적용제외금액으로 포함할 수 없음
 - ②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작성된 공사공정 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선시공 등)에는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 적용 대가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출

! 관련 규정 : 회계제도과-731, 2004. 05. 15

Q

계속비공사의 선금 공제금액 산정

- A
- ① 계속비공사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연부액을 대상으로 산출한 선금 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함

② 총계약금액(조정기준일 현재)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연부액) 이전까지의 연부액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선급 공제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ex) 총계약금액 : 2,500억원
 1차년도 연부액 : 300억원,
 2차년도 연부액 : 200억원
 3차(당해연도)연부액 : 400억원 물가변동 제외금액 : 700억원
 선급 적용대가 : 400 - (700-300-200) = 200억원

임 하에 각종 증빙서류를 참조하여 개산급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조달청에 조정 요청하여야 함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 증빙서류〉

1.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임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고
2. 신청한 내용에 따라 개산급에 의한 기성(준공)검사를 실시한 내용
3. 개산급에 의한 지출명세서
4. 감사원에 보고한 자료
5. 사후정산 또는 설계변경 확정내용

〈 계속비공사와 장기계속공사의 구분 〉

- ▶ 계속비공사란(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 계속비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 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공사
- ▶ 장기계속공사란(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 ③ 장기계속공사 계약에 있어서 차수별 준공 대가는 개산급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④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 상대방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 지급 시에는 공제하며, 동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Q 물가변동 조정신청에 있어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 공제 여부와 적용기준?

- A**
- ① 개산급에 대한 기성대가임을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산급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주의사항 : 계약담당공무원(수요기관) 책

※ 개산급의 정의(수입,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 ▶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된 경우 개략금액으로 채무이행이 도래이전에 지급하고 사업 실적에 의하여 채무액을 확정 정산함을 말함

! 관련 규정 :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
- 회제 41301-1046, '03. 09. 30
- 회제 41301-127, '03. 02. 05
- 회제 41301-1886, '97. 07. 14